

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3. 11. 7 조례 제250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노인회”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말한다.
2. “대한노인회원”이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)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·관리
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5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6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진흥·홍보출판·국제교류등의 업무
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8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9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비용의 보조 등)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

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
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,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